

의안번호	제3002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 사항	
----------	--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5. 9. 26.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김향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2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김향숙, 최두임,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이정숙 의원
(6인)

1. 제안이유

- 고성군의회 의정 정보를 누리집, 소셜미디어, 각종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의정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목적: 의정 정보 전달 및 군민 이해·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
- 정의: “의정 홍보”, “소셜미디어”, “의정홍보물” 등 용어 정의

나. 의장의 책무(안 제3조)

- 정보 공개와 공평한 제공 원칙 준수
- 군민 참여 보장 및 알 권리 증진
- 사회통합·양성평등 의식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홍보활동 강조
- 관련 법령(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준수

다. 홍보사업(안 제4조)

- 업무: 누리집, 소셜미디어, 인터넷방송 운영, 의정 홍보영상, 소

식지 제작·배포, 군민 소통·참여를 위한 기념품 제작·제공
라. 홍보의 내용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 홍보의 내용

-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
- 의정 소식 및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 홍보 활동

- 누리집 설치 및 운영,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영상 제작, 인터넷 방송 설치·운영, 의정 소식지의 발행

마. 자료 관리 및 게시물 관리(안 제11조)

- 최신 정보 게시 및 유지·관리
-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 기준 명시
-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부여

바. 기념품 제공(안 제12조)

-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 제공 가능
- 예산 범위 내 제공, 제공 기준은 의장이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47호

- 예고기간: 2025. 9. 26.(금) ~ 10. 1.(수)[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정 정보를 다양한 매체로 제공하여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의정 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 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며, 군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증진한다.

- ② 의장은 이를 위해 누리집,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군민 모두가 의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힘써야 한다.

④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저작권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홍보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누리집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인터넷방송 운영
4. 의정홍보 영상 또는 의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등 제작 및 배포
5. 군민 소통·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제공
6.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홍보의 내용) 의장은 소셜미디어 및 의정 홍보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사항

제6조(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인터넷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정책, 의정에 관한 홍보영상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각 홍보 매체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군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소식지의 발행) ①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를 반기별(연 2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발행주기

와 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포한다.

③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정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 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2조(기념품 제공) ① 고성군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기념품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하며, 의례적 수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③ 기념품의 종류, 수량, 제공대상, 제공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